

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(재민 86-5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현재 ‘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’은 일반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함께 “손해배상(기)”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 ‘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’을 구별하여 별도의 사건명을 부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‘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’을 표시하는 사건명 “손해배상(해)”를 신설함(안 제10항 신설)

3.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(재민 86-5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(재민 86-5) 일부개정예규안

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(재민 86-5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각 항 외의 부분 중 “손해배상(자), (산), (의), (환), (지), (저), (언), (건), (국), (기)”를 “손해배상(자), (산), (의), (환), (지), (저), (언), (건), (국), (해), (기)”로 한다.

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손해배상(해)로 표시할 사건

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“손해배상” 으로 표시해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<u>손해배상(자), (산), (의), (환), (지), (저), (언), (건), (국), (기)</u>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	<p>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“손해배상” 으로 표시해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<u>손해배상(자), (산), (의), (환), (지), (저), (언), (건), (국), (해), (기)</u>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손해배상(해)로 표시할 사건</u> <u>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항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